# 6·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86

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예지·홍준표

전주혜 · 강대식 · 최춘식

조수진 · 김석기 · 이철규

이양수 · 김용판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

6·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6·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,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 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음. 특히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 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.

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 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함(안 제2조).
- 나.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4조).
- 다.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,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 게 송달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마.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

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- 바.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사.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 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(안 제 17조).
- 아. 공로자 및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
- 자.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 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 ·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19조).

## 6 · 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6·25전쟁 중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비정규군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(외국군·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한다)되어 활동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.
- 2. "비정규전"이란 비정규군의 신분으로 적(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을 포함한다)의 점령·지배·활동지역 안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작전을 말한다.
- 3. "공로자"란 비정규군의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4. "유족"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

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.

- 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 및 제2장(외환의 죄)에 따른 죄
- 2.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·제2장(이적의 죄) 및 제81조 (암호부정사용)에 따른 죄
- 3. 「국방경비법」(1948. 7. 5.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
  2. 1. 20.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) 제29조(암호의 부정사용)・제32조(적에 대한 구원, 통신연락 또는 방조) 및 제33조(간첩)에 따른 죄
- 4. 「반공법」(1961. 7. 3.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. 12. 31.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를 제외한다) 또는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따른 죄
- 제4조(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)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 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  - 1.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
  - 2.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 한 사항

- 3. 공로자 또는 그 유족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
- 4.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다.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보상금등) ①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
  - ② 공로자에게는 비정규전을 수행한 기간, 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외에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공로금(이하 "보상금등"이라한다)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유족의 권리)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「민법」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7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)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급결정)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
  - 1.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를 공로자로 주 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
  - 3.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 사가 불가능한 경우
- 제9조(결정서의 송달)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0조(재심의)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

- 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 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의 지급결정 기한은 3개월로 한다.
- 제11조(보상금등의 지급 등) ①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) ①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  - ②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결정전치주의 등)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가 제8조제1 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(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)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지급결정 동의의 효력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- 제15조(보상금등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
  - 2. 잘못 지급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6조(사실조사 등)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 자·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- 제17조(소멸시효)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.
- 제18조(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정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

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9조(중복 보상의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로자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공로자 및 그 유족이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 은 경우
  - 2.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
  - 3.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·비금전적인 보 상이 이루어진 경우(외국군·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 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보상금등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벌칙)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21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

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.